

※ 2010. 1. 1.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(4쪽 중 제1쪽)

관리번호

-

(   년 귀속)양도소득(국외전출자)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

((   )예정신고, (   )확정신고, (   )수정신고, (   )기한 후 신고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① 신고인<br>(양도인)                | 성명      |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내·외국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[   ]내국인, [   ]외국인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자우편주소  |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거주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[   ]거주자, [   ]비거주자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거주지국 | 거주지국코드              |        |
| ② 양수인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      |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양도자산 소재지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분   | 양도인과의 관계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③ 세율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| 코드      | 양도소득세<br>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내분 소계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| -                   | 국외분 소계 |
| ④ 양도소득금액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⑤ 기신고·결정·경정된 양도<br>소득금액 합계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⑦ 양도소득기본공제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⑧ 과세표준<br>(④+⑤-⑥-⑦)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⑨ 세율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⑩ 산출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⑪ 감면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⑬ 원천징수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⑭ 연금계좌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⑮ 전자신고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⑯ 가산세                         | 무(과소)신고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납부지연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장불성실 등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계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⑰ 기신고·결정·경정세액, 조정공제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⑱ 납부할 세액<br>(⑩-⑪-⑫-⑬-⑭-⑮+⑯-⑰)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⑲ 분납(물납)할 세액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⑳ 납부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㉑ 환급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신고인은 「소득세법」 제105조(예정신고)·제110조(확정신고),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(수정신고)·제45조의3(기한 후 신고) 및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7조에 따라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㉒ 소득세 감면세액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신 고 인<br>(서명 또는 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㉓ 세율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㉔ 산출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㉕ 수정신고가산세등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㉖ 기신고·결정·경정세액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신 고 인<br>(서명 또는 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㉗ 납부할 세액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환급금 계좌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<br>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㉘ 분납할 세액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세무대리인<br>(서명 또는 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㉙ 납부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㉑ 금융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세무서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㉚ 환급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㉒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|      |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|------|--|----------|
| 붙임서류          | 1.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(부표 1, 부표 2, 부표 2의2 중 해당하는 것) 1부<br>2. 매매계약서(또는 증여계약서) 1부<br>3.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<br>4. 감면신청서, 세액공제 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<br>5.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|  |  |         |      |  | 접수일<br>인 |
| 담당공무원<br>확인사항 | 1.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<br>2.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|      |  |          |
| 세무대리인         | 성명(상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사업자등록번호 |      |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생년월일    | 전화번호 |  |          |

## 작성 방법

1.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.
2. ① 신고인(양도인)란: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(full name)를 적습니다.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,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, 이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. 내·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□안에 "√" 표시를 하고, 국제표준화기구(ISO)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참고하여 국적(국적코드)과 거주지국(거주지국코드)을 적습니다.
3. ② 양수인란: 양도물건별로 적되,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,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.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, 이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.  
※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: 타인, 배우자, 자, 부모, 형제자매, 조부모, 손자·손녀 등
4. ③ 세율구분란: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(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)의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(기타자산 주식은 제외합니다)을 합산하여 적습니다.
5. ④ 양도소득금액란: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(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)의 ⑩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.
6.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: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「소득세법」 제90조제2항(소득금액 차감방식)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.
7. ⑦ 양도소득기본공제란: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, 미등기양도자산은 공제하지 않습니다(부동산 등, 파생상품, 신탁수익권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며, 주식은 '20.1. 1.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·국외주식 양도소득금액 통산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).
8. ⑩ 산출세액란: 해당 과세기간에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아래 '가'와 '나' 중 큰 금액이 계산되는 경우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.  
가.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「소득세법」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 
나.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
9. ⑪ 감면세액란 및 ⑫ 외국납부세액공제란: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.  
※ ⑪ 감면세액란은 「소득세법」 제90조제1항(세액감면방식)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.
10. ⑬ 원천징수세액공제란: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.
11. ⑭ 연금계좌세액공제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9조의1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부동산 양도금액의 10%를 적습니다.
12. ⑮ 전자신고세액공제란: 납세자가 직접 「국세기본법」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(20,000원)을 적되, 공제세액이 ⑩란의 세액에서 ⑪란부터 ⑭란까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13. ⑯ 가산세란: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·납부 불이행에 따른 무(과소)신고(일반무신고 20%, 부당무신고 40%, 일반과소신고 10%, 부당과소신고 40%)·납부지연[1일 3/10,000(2019. 2. 12. 이후 1일 2.5/10,000, 2022. 2. 15. 이후 1일 2.2/10,000)]·기장불성실 등 가산세[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(감정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5%),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(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%)는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란에 기재] 금액을 적습니다.
14. ⑰ 기신고·결정·경정세액, 조정공제란: 기신고세액(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), 무신고결정·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(누계금액을 말합니다)을 적고,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.
15. ⑱ 납부할 세액란부터 ㉑ 환급세액란까지: 계산 결과 신고·납부(또는 환급)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.
16. 환급금 계좌신고(㉓·㉔)란: 송금받을 본인 예금계좌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.
17. 관리번호란: 「세무사법」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. 다만,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.
18. 생년월일란: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(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)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.

## 작성 방법

##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

|                  | 세 율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코 드  | 세 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<br>내<br>자<br>산 | <b>1.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(토지·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)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① 일반세율 적용 토지·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10 | 6~42%( ' 21.1.1.이후 양도분 6~45%)   |
|                  |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·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(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15 | 4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③ 1년 미만 보유 토지·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(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20 | 5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④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40 | 4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( ' 21.6.1.이후 양도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39 | 6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⑥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( ' 21.6.1.이후 양도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46 | 7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⑦ 1년 이상 보유 분양권( ' 21.6.1.이후 양도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23 | 6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⑧ 미등기 양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30 | 7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⑨ 일반세율에 10%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비사업용토지,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11 | 16~52%( ' 21.1.1.이후 양도분 16~55%) |
|                  | ⑩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35 | 4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⑪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36 | 5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⑫ 일반세율에 20%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<br>( ' 18.1.1. 이후 양도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31 | 26~62%( ' 21.1.1.이후 양도분 26~65%) |
|                  | 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( ' 18.1.1. 이후 양도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37 | 4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⑭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( ' 18.1.1. 이후 양도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38 | 5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⑮ 비사업용토지, ' 09.3.16. ~ ' 12.12.31. 취득하여 양도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10 | 6~42%( ' 21.1.1.이후 양도분 6~45%)   |
|                  | ⑯ 일반세율에 10%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<br>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0이상인 경우( ' 18.3.31.<br>양도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71 | 16~52%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⑰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<br>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0이상인 경우( ' 18.3.31. 양도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73 | 4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⑱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( ' 18.1.1.~ ' 21.5.31.양도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21 | 5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⑲ 일반세율에 10%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<br>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( ' 18.4.1.~ ' 21.5.31. 양도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51 | 16~52%( ' 21.1.1.이후 양도분 16~55%) |
|                  | ⑳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<br>( ' 18.4.1.~ ' 21.5.31. 양도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53 | 4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㉑ 일반세율에 10%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<br>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( ' 21.1.1. 이후 취득)을 각각<br>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( ' 18.4.1.~ ' 21.5.31. 양도분)             | 1-52 | 16~52%( ' 21.1.1.이후 양도분 16~55%) |
|                  | ㉒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<br>또는 분양권( ' 21.1.1. 이후 취득)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<br>( ' 18.4.1.~ ' 21.5.31. 양도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54 | 4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㉓ 일반세율에 20%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<br>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( ' 18.4.1.~ ' 21.5.31. 양도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55 | 26~62%( ' 21.1.1.이후 양도분 26~65%) |
|                  | ㉔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<br>( ' 18.4.1.~ ' 21.5.31. 양도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57 | 4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㉕ 일반세율에 20%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<br>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( ' 21.1.1. 이후 취득)을 보유한 경우<br>로서 그 수의 합이 30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( ' 18.4.1.~ ' 21.5.31. 양도분) | 1-56 | 26~62%( ' 21.1.1.이후 양도분 26~65%) |
|                  | ㉖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<br>또는 분양권( ' 21.1.1. 이후 취득)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0이상인 경우<br>해당 주택( ' 18.4.1.~ ' 21.5.31. 양도분)                 | 1-58 | 4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작성 방법

##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

| 세 율 구 분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코 드  | 세 율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<br>내<br>자<br>산 | ㉔ 일반세율에 20%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(' 21.6.1. 이후 양도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47 | 26~65%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㉕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(' 21.6.1. 이후 양도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84 | 70%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㉖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(' 21.6.1. 이후 양도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82 | 60%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㉗ 일반세율에 20%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(' 21.1.1. 이후 취득)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(' 21.6.1. 이후 양도분)           | 1-48 | 26~65%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㉘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(' 21.1.1. 이후 취득)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(' 21.6.1. 이후 양도분)                         | 1-85 | 70%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㉙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(' 21.1.1. 이후 취득)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(' 21.6.1. 이후 양도분)                   | 1-83 | 60%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㉚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(' 21.1.1. 이후 취득)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(' 21.6.1. 이후 양도분)                    | 1-49 | 36~75%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㉛ 일반세율에 30%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(' 21.6.1. 이후 양도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88 | 70%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㉜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(' 21.6.1. 이후 양도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86 | 60%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㉝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(' 21.6.1. 이후 양도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50 | 36~75%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㉞ 일반세율에 30%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(' 21.1.1. 이후 취득)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(' 21.6.1. 이후 양도분) | 1-89 | 70%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㉟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(' 21.1.1. 이후 취득)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(' 21.6.1. 이후 양도분)               | 1-87 | 60%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㊱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(' 21.1.1. 이후 취득)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(' 21.6.1. 이후 양도분)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2.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3호(주식 또는 출자지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국내주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70 | 30%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② 중소기업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, 중소기업법인 국외주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62 | 10%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③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, 중소기업 외 법인 국외주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61 | 20%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④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,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국내주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63 | 20~25%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3.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4호(기타자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① 주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10 | 6~42%(' 21.1.1.이후 양도분 6~45%) |
|                  | ② 주식 외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10 | 6~42%(' 21.1.1.이후 양도분 6~45%) |
|                  | ③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(' 09.3.16. ~ ' 15.12.31. 양도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10 | 6~35%(' 12.1.1.이후 6~38%)     |
| 국<br>외<br>자<br>산 | 4.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5호(파생상품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80 | 5%(' 18.3.31. 이전)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81 | 10%(' 18.4.1. 이후)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5.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6호(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95 | 20~25%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6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8조(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92 | 20%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7. 「소득세법」 제3장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(국외전출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94 | 20~25%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1. 「소득세법」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(토지·건물, 부동산에 관한 권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-10 | 6~42%(' 21.1.1.이후 양도분 6~45%) |
|                  | 2. 「소득세법」 제118조의2제5호(기타자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① 주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-10 | 6~42%(' 21.1.1.이후 양도분 6~45%) |
|                  | ② 주식 외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-10 | 6~42%(' 21.1.1.이후 양도분 6~45%)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관리번호

-

※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.

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

□ 양도자산 및 거래일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|         |   |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|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① 세             | 을                 | 구   | 분 | ( 코드 )  | 합 | 계 | ( - )        | ( - )        | ( - )        |
| ② 소재지국          | 소                 | 재   | 지 |         |   |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부                 | 동   | 산 | 고 유 번 호 |   |   | - -          | - -          | - -          |
| ③ 자             | 산                 | 종   | 류 | ( 코드 )  |   |   | ( )          | ( )          | ( )          |
| 거 래 일<br>(거래원인) | ④                 | 양   | 도 | 일 (원인)  |   |   | ( )          | ( )          | ( )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⑤                 | 취   | 득 | 일 (원인)  |   |   | ( )          | ( )          | ( )          |
| 거래자산<br>면적 (㎡)  | ⑥ 총 면 적<br>(양도지분) | 토 지 |   |         |   |   | ( / )        | ( / )        | ( / )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건 물 |   |         |   |   | ( / )        | ( / )        | ( / )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⑦ 양도면적            | 토 지 |   |         |   |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건 물 |   |         |   |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⑧ 취득면적            | 토 지 |   |         |   |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건 물 |   |         |   |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1세대1주택<br>비과세대상 | ⑨ 보 유 기 간         |     |   |         |   |   | 년 이상    년 미만 | 년 이상    년 미만 | 년 이상    년 미만 |
|                 | ⑩ 거 주 기 간         |     |   |         |   |   | 년 이상    년 미만 | 년 이상    년 미만 | 년 이상    년 미만 |

□ 양도소득금액 계산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거래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⑪ 양 도 가 액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⑫ 취 득 가 액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취 득 가 액 종 류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⑬ 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납 부               | 토 지 초 과 이 득 세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⑭ 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타                 | 필 요 경 비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양도차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 체 양 도 차 익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과 세 양 도 차 익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⑮ 과 세 대 상 양 도 차 익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⑯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(코드)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( )          | ( )          | ( )          |
| ⑰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적 용 대 상 거 주 기 간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년 이상    년 미만 | 년 이상    년 미만 | 년 이상    년 미만 |
| ⑱ 양 도 소 득 금 액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감면소득<br>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| ⑲ 세 액 감 면 대 상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⑳ 소 득 금 액 감 면 대 상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㉑ 감 면 종 류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 면 율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
□ 기준시가 (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)

|       |       |  |  |  |  |
|-------|-------|--|--|--|--|
| 양 도 시 | ㉒ 건 물 |  |  |  |  |
| 기 준   | ㉓ 토 지 |  |  |  |  |
| 시 가   | 합 계   |  |  |  |  |
| 취 득 시 | ㉔ 건 물 |  |  |  |  |
| 기 준   | ㉕ 토 지 |  |  |  |  |
| 시 가   | 합 계   |  |  |  |  |

210mm×297mm[백상지80g/㎡ 또는 중질지80g/㎡]

## 작성 방법

1. ① 서울구분란: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.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서울(단일서울, 누진서울)이 해당될 경우 해당 서울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(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)을 적용합니다. 다만, 하단 ( )내 서울은 '21.1.1.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.

| 소재지 구분 | 소재지    |        | 세<br>울<br>구<br>분   | 토지·건물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       | 국<br>내 | 국<br>외 |                    | 2년<br>이상<br>보유 | 1년이상<br>2년미만<br>보유 | 1년<br>미만<br>보유 | 1년미만<br>보유주택<br>및 조합원<br>입주권<br>(~'21.5.31.<br>양도분) | 미<br>등<br>기        | 비사업용토지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2년<br>이상<br>보유 | 1년이상<br>2년미만<br>보유  |     | 1년미만<br>보유          |     | 자정지역내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'09.3.16~<br>'12.12.31.<br>취득하여<br>양도분<br>(2년이상보유) |    |
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2년<br>이상<br>보유      | 1년이상<br>2년미만<br>보유  | 1년미만<br>보유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|        |        | 6~<br>42%<br>(45%) | 40%            | 6~<br>42%<br>(45%) | 50%            | 4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~<br>42%<br>(45%) | 70%            | 16~<br>52%<br>(55%) | 40% | 16~<br>52%<br>(55%) | 50% | 16~<br>52%<br>(55%) | 26~<br>62%<br>(65%) | 40%        | 26~<br>62%<br>(65%) | 50% | 26~<br>62% | 6~42%<br>(45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코드     | 1      | 2      | 코드                 | 10             | 15                 | 10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                 | 10             | 30                  | 11  | 35                  | 11  | 36                  | 11                  | 31         | 37                  | 31  | 38         |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|

| 세<br>울<br>구<br>분 | 토지·건물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자산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| 다주택<br>(~'18.3.31. 양도분) |            |            | 다주택('18.4.1.~'21.5.31. 양도분)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2년<br>이상<br>보유      | 1년이상<br>2년미만<br>보유 | 1년<br>미만<br>보유 | 조정대상<br>지역내<br>분양권<br>(~'21.<br>5.31.<br>양도분) | 비사업용<br>토지<br>과다보유<br>법인주식 | 그 외<br>기타자산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지정지역내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조정대상지역내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1세대3주택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1세대2주택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1세대가 주택과<br>조합원입주권('21.1.1.이<br>후 분양권 포함)의 합이<br>2인 경우<br>해당 주택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1세대3주택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1세대가 주택과<br>조합원입주권('21.1.1.이<br>후 분양권 포함)의<br>합이 3이상인 경우<br>해당 주택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1년<br>이상<br>보유          | 1년미만<br>보유 |            | 1년<br>이상<br>보유              | 1년미만<br>보유 |                     | 1년<br>이상<br>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미만<br>보유 |                     | 1년<br>이상<br>보유      | 1년미만<br>보유 |                     | 1년<br>이상<br>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미만<br>보유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서울               | 16~<br>52%              | 40%        | 16~<br>52% | 16~<br>52%<br>(55%)         | 40%        | 16~<br>52%<br>(55%) | 16~<br>52%<br>(55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%        | 16~<br>52%<br>(55%) | 26~<br>62%<br>(65%) | 40%        | 26~<br>62%<br>(65%) | 26~<br>62%<br>(65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%        | 26~<br>62%<br>(65%) | 6~<br>42%<br>(45%) | 40%            | 6~<br>42%<br>(45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%                        | 50%         | 16~<br>52%<br>(55%) | 6~<br>42%<br>(45%) |  |
| 코드               | 71                      | 73         | 71         | 51                          | 53         | 51                  | 5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4         | 52                  | 55                  | 57         | 55                  | 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8         | 56                  | 10                 | 15           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           | 21          | 11                  | 10                 |  |

| 세<br>울<br>구<br>분 | 토지·건물·부동산에 관한 권리('21.6.1.이후 .양도분)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| 2년미만<br>1년이상<br>보유주택<br>및 조합원<br>입주권 | 1년미만<br>보유주택<br>및 조합원<br>입주권,<br>분양권 | 1년 이상<br>보유<br>분양권 | 신탁<br>수익권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| 다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조정대상지역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1세대2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1세대가 1주택과<br>조합원입주권 또는<br>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<br>해당주택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1세대3주택 이상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<br>분양권('21.1.1. 이후 취득)을<br>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<br>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2년<br>이상<br>보유                    | 2년 미만<br>보유 | 1년<br>미만<br>보유 | 2년<br>이상<br>보유 | 2년 미만<br>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<br>미만<br>보유 | 2년<br>이상<br>보유 | 2년 미만<br>보유 | 1년 미만<br>보유 | 2년<br>이상<br>보유 | 2년 미만<br>보유 | 1년 미만<br>보유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서울               | 26~<br>65%                        | 60%         | 26~<br>65%     | 70%            | 26~<br>6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0%            | 26~<br>65%     | 70%         | 36~<br>75%  | 60%            | 36~<br>75%  | 70%         | 36~<br>7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0% | 36~<br>75% | 70% | 36~<br>75% | 60% | 70% | 6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<br>~25%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코드               | 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2          | 47             | 84             | 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3             | 48             | 85          | 49          | 86             | 49          | 88          | 4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 | 87         | 50  | 89         | 50  | 39  | 4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5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
2. ② 소재지국의 부동산고유번호란: 양도자산이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(0000-0000-000000)를 적습니다.

3. ③ 자산종류란: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.

| 자산<br>종류 | 토지·건물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부동산에 관한 권리 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| 기타자산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탁<br>수익권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         | 토지    | 고가<br>주택 | 일반<br>주택 | 기타<br>건물 | 지상권        | 전세권 | 등기된<br>부동산<br>임차권 |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<br>권리 |     |    | 특정<br>주식 | 영업권 | 시설물<br>이용권 | 이촉권 | 부동산<br>과다<br>보유법<br>인주식 |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 조합원<br>입주권           | 분양권 | 기타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코드       | 1     | 2        | 3        | 4        | 5          | 6   | 7                 | 24                   | 25  | 8  | 14       | 15  | 16         | 23  | 17                      | 26        |

## 작성 방법

4. ④, ⑤ 양도·취득원인: 매매, 수용, 협의매수, 교환, 공매, 경매, 부담부증여(양도에 해당), 상속, 증여, 신축, 분양, 기타 등을 적습니다.
5. ⑥ 총면적란: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, 양도지분을 별도로 적습니다.
6. ⑦ 양도면적란: ⑥ 총면적 × 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.
7. ⑨ 보유기간란: 「소득세법」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적습니다.
8. ⑩ 거주기간란: ⑨란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적습니다.
9. ⑫ 취득가액란: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(상속·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의 나, 다, 기준시가 중 확인되는 가액을 적습니다).
  - 가.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: 취득에 실제 든 가액(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의 ⑤번란의 금액)
  - 나.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: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음
  - 다.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: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을 적음 ('20.2.11. 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도 인정)
  - ※ 감정평가법인등: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의미합니다.
  - 라. 환산취득가액에 의하는 경우: 양도가액(⑨번) × [취득시기기준시가(⑳+㉑)/양도시기기준시가(㉒+㉓)]로 환산한 가액을 적음
  - ※ 취득가액 종류란: 실지거래가액, 매매사례가액, 감정가액, 환산취득가액,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으며,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, 해당정부평가액, 매매사례가액, 감정가액으로 구분하여 원화환산금액을 적습니다.
10. ⑬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란: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.
11. ⑭ 기타 필요경비란: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(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의 ⑬란의 금액)을 적고, 취득 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·감정가액·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3조제6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.
12. ⑯ 장기보유특별공제(코드)란: 토지·건물의 ⑬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, 국외자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※ (코드)는 아래 표의 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.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| 코드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세대1주택                   | 01 | '21.1.1.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12%부터 매년 4%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%한도로 공제하고, 3년 이상 거주 12%(다만 보유기간 3년 이상자 중 2년 이상 거주는 8%)부터 매년 4%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%한도로 공제 (「소득세법」 제95조제2항 표2) |
| 1세대1주택 외                 | 02 | '20.12.31.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24%부터 매년 8%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%한도로 공제 ('19.1.1.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6%부터 매년 2%씩 추가 공제하며 15년 이상은 30%한도로 공제 (「소득세법」 제95조제2항 표1))                |
|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          | 03 | 보유·거주기간 미충족 또는 미등기 양도자산, 종과대상 다주택 등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(「조특법」 97조의3) | 04 |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의 70% 공제(8년 이상은 50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장기임대주택 (「조특법」 97조의4)     | 05 |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에 임대기간 6년 이상 2%, 7년 이상 4%, 8년 이상 6%, 9년 이상 8%, 10년 이상 10%를 추가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방비분양주택 취득 (「조특법」 98조의2) | 06 | '08.11.3.~'10.12.31.중 취득한 지방비분양 주택을 '08.12.26.이후 양도할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「조특법」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을 의미합니다.

13. ⑰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대상거주기간란: 「소득세법」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('21.1.1. 이후 양도분)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적습니다(전체 거주기간으로 ⑩의 거주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).
14. ⑲ 세액감면대상란: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「소득세법」 제90조제1항(세액감면방식)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.
15. ⑳ 소득금액감면대상란: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「소득세법」 제90조제2항(소득금액 차감방식)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.
16. ㉑ 감면종류 및 감면율란: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(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).
17. ㉒ 건물란: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양도 당시 금액을 적습니다.
  - 가. 일반건물: 국제청장이 고시한 금액(건물 m<sup>2</sup>당 가액)에 건물면적(전용+공용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  - 나. 상업용·오피스텔: 국제청장이 고시한 금액(토지+건물)에 건물면적(전용+공용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  - 다. 개별·공동주택: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(토지+건물)
18. ㉓ 토지란: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19. ㉔ 건물란: ㉒ 건물란의 작성방법에 따라 취득당시 금액을 적습니다(최초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고시금액을 취득 시로 환산한 가액).
20. ㉕ 토지란: 취득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(취득일이 '90.8.29. 이전인 경우에는 '90.1.1.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 취득 시로 환산한 가액).

|      |   |
|------|---|
| 관리번호 | - |
|------|---|

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

|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① 주 식 등 종 목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합계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② 주식등 종목코드 또는<br>사업자등록번호(해<br>외주식은 ISIN코드와<br>국가명)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③ 국 내 / 국 외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④ 주 식 등 종 류 코 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⑤ 양 도 유 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⑥ 취 득 유 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⑦ 취 득 유 형 별 수<br>양 도 주 식 등 수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⑧ 양 도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⑨ 주 당 양 도 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⑩ 양 도 가 액 ( ⑦ × ⑨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⑪ 취 득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⑫ 주 당 취 득 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⑬ 취 득 가 액 ( ⑦ × ⑫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⑭ 필 요 경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양도소득금액<br>( ⑩ - ⑬ - ⑭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 체<br>양도소득금액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과 세<br>양도소득금액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⑮<br>과 세 대 상<br>양도소득금액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⑯ 감 면 소 득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⑰ 감면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 면 율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⑱ 과 세 이 연 신 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1.여 | 2.부 | 1.여 | 2.부 | 1.여 | 2.부 | 1.여 | 2.부 | 1.여 | 2.부 | 1.여 | 2.부 |

※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(원천징수된 경우는 제외).
   
 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## 작성 방법

1. ① 주식등 종목명란: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.
2. ② 주식등 종목코드란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시장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,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  
※ 국외주식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(ISIN코드)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.
3. ③ 국내 / 국외 구분 : 국내·국외주식 구분에 따른 코드를 적습니다.(국외주식은 「소득세법」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)

| 유형 | 국내주식 | 국외주식 |
|----|------|------|
| 코드 | 1    | 2    |

4.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: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적습니다.

| 주식등<br>종류 | 비상장주식등<br>주권 등 비상장법인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장주식등<br>주권등 상장법인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<br>자산<br>(주식등<br>양도분) | 기타자산<br>(주식등<br>양도분<br>-비사업용<br>토지) | 국외<br>주식등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| 중소<br>기업<br>(소액주주)   | 중소<br>기업<br>(대주주) | 중소<br>기업외<br>법인<br>(소액주주) | 중소<br>기업외<br>법인<br>(대주주) | 중소<br>기업외<br>법인<br>1년 미만 | 중소<br>기업<br>(소액주주)         | 중소<br>기업<br>(대주주)          | 중소<br>기업외<br>법인<br>(소액주주) | 중소<br>기업외<br>법인<br>(대주주) | 중소<br>기업외<br>법인<br>1년 미만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소<br>기업  | 중소<br>기업외<br>법인 |
| 세율        | 10%                  | 20~25%            | 20%                       | 20~25%                   | 30%                      | 10%                        | 20~25%                     | 20%                       | 20~25%                   | 30%                      | 누진                       | 누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%       | 20%             |
| 코드        | 31                   | 34                | 32                        | 35                       | 33                       | 코스피 43<br>코스닥 21<br>코넥스 71 | 코스피 44<br>코스닥 24<br>코넥스 74 | 코스피 42<br>코스닥 22          | 코스피 45<br>코스닥 25         | 코스피 41<br>코스닥 23         | 51                       | 5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2        | 61              |

※ 국외주식란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.

5. ⑤ 양도유형란: 다음의 주식등 양도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.

| 양도 유형 | 매매 |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|
|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코드    | 1  | 2                         |

6. ⑥ 취득유형란: 다음의 주식등 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.

| 취득유형 | 매매 | 공모 | 유상증자 | 무상증자 | 주식배당 | 합병 | 증여 | 상속 | 출자 | 기타 |
|------|----|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| 코드   | 1  | 2  | 3    | 4    | 5    | 6  | 7  | 8  | 10 | 9  |

7. ⑦ 취득유형별 양도주식등 수란: 양도주식등의 수를 적되, 양도하는 주식등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.
8. ⑧ 주당양도가액란: 양도하는 주식등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.
9. ⑩ 양도가액란: 양도하는 주식등의 실지거래가액(⑦×⑧)을 적으며, 국외자산은 원화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10. ⑫ 주당취득가액란: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가액(상속·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)을 적습니다.  
※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되,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·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.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, 해당정부 평가액, 매매사례가액,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.
11. ⑭ 필요경비란: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·증권거래세·농어촌특별세 등 실제 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적되,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 시가의 1%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12. ⑯ 감면 소득금액란: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(과세이연 특례 신청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).
13. ⑰ 감면종류 및 감면율란: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(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).
14. ⑱ 과세이연 신청 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 신청 해당여부에 따라 각각 해당란에 "○" 표시를 합니다(과세특례에 따른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).

※ 작성예시: 중소기업 소액주주가 비상장 국내주식(사업자등록번호: 1238145678)을 매매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

가. 주식등 종목명: 주식발행법인명, 나. 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: 1238145678 다. 국내 / 국외구분 : 1 라. 주식등 종류코드: 31 마. 양도유형: 1 바. 취득유형: 1  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작성 방법

15.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⑤ 양도유형란에 2번을 적고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.

④ 주식등 종류코드란: 주식 종류에 따라, 34, 35, 33, 44, 24, 74, 45, 25, 41, 23, 51 코드 중 하나만 적습니다.

⑧ 양도일자란: 출국일(국외전출일)을 적습니다.

⑨ 주당양도가액란: 출국일 당시의 1주당 시가를 적되,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78조의9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.

⑩ 양도가액란: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시가(⑦×⑨)를 적습니다.

※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4.주식등 종류코드 관련 표에도 불구하고 20~25% 세율을 적용합니다.

관리번호

-

①과세대상연도

년

\*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.

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

| ②세율<br>구분코드 | 종목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| 파생상품 등 매도 내용 |       |        | 파생상품 등 매수 내용 |       |        | 기타 수입액 및 지출액 |      | ⑮ 양도소득금액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| ③국내/외 | ④파생상품 유형 | ⑤증권사 등 | ⑥계좌번호 | ⑦매도수량        | ⑧매도가액 | ⑨수수료 등 | ⑩매수수량        | ⑪매수가액 | ⑫수수료 등 | ⑬수입액         | ⑭지출액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합계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
## 작성 방법

1. 본 서식은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작성하며 란은 적지 않습니다.
2. ①과세대상연도란: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연도를 적습니다.
3. ② 세율구분코드란 :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기간에 따라 코드를 적습니다.

| 양도일 | 2016.1.1.~2018.3.31. | 2018.4.1. 이후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세율  | 5%                   | 10%          |
| 코드  | 80                   | 81           |

4. ③국내/외란 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을 거래한 경우에는 ‘국내’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‘국외’로 적습니다.
5. ④파생상품 유형란: 거래기법에 따라 선물, 콜옵션, 풋옵션, 콜 주식워런트증권, 풋 주식워런트증권, 차액결제거래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.
6. ⑤증권사 등란: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7. ⑥계좌번호란: 해당 파생상품을 거래한 계좌번호를 적습니다.
8. ⑦매도수량 및 ⑩매수수량란: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수량을 적으며 매도수량과 매수수량은 같아야 합니다.
9. ⑧매도가액란: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매도가액을 적습니다.
10. ⑨ 및 ⑫수수료 등란: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(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수수료)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.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 연간 합계액으로 합산합니다.
11. ⑪매수가액란: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매수가액을 적습니다.
12. ⑬수입액란: 차액결제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,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이외의 계약에 따른 지급받는 소득을 적습니다.
13. ⑭지출액란: 차액결제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, 이자비용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을 적습니다.
14. ⑮양도소득금액란: 같은 종목의 양도소득금액(⑧ - ⑨ - ⑪ - ⑫ + ⑬ - ⑭)을 적습니다.

■ 소득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3] 삭제 <[2018. 3. 21.](#)>

##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(1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분<br>코드        | 거래상대방 |         | 지급일 | 지급<br>금액 | 증빙<br>문류<br>(코드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상호    | 사업자등록번호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취득<br>가액                   | ① 타인으로<br>부터<br>매입한<br>자산      | 매 입 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1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취 득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2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등 록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3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부대<br>비용                       | 법 무 사 비 용       | 114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취득증개수료          | 115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 타             | 116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자기가 제 조 · 생 산 · 건 설 한 자<br>산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0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0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가산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| 취 득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 호 사 비 용       | 131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쟁 송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 타 비 용         | 132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매 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 자 부 담         | 133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도 소 득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134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차감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 가 상 각 비                        | 141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계 (①+③-④ 또는 ②+③-④)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기<br>타<br>필<br>요<br>경<br>비 | 자<br>본<br>적<br>지<br>출<br>액     | ⑥ 자본적<br>지출액                     | 용도변경·개량·이<br>용  | 260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편 의 를 위 한 지 출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엘리베이터 냉난방설치     | 260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피 난 시 설 등 설 치   | 260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해등으로인한자산의완복구   | 260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발 부 담 금       | 261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 건 축 부 담 금     | 261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 산 가 치 증 가 등   | 260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 선 비           | 260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 타             | 260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<br>출<br>액                    | ⑦ 취득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 호 사 비 용       | 271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쟁 송 비           | 272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⑧ 기타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 익 자 부 담 금     | 281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토 지 장 애 철 거 비   | 280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도 로 시 설 비 등     | 280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 방 사 업 소 요 비 용 | 280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 타             | 280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⑨ 계 (⑥+⑦+⑧)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양<br>도<br>비<br>등               | ⑩ 양도 시 증개수료등 직접 지출비용             | 290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⑪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가발채권 매각차손 등<br>기타경비 | 291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⑫ 계 (⑩+⑪)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⑬ 기타 필요경비 계 (⑨+⑫)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
작성 방법

(음영표시란은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)

1. 증빙종류 코드

| 증빙종류 | 현금영수증 | 신용카드<br>영수증 | 세금계산서 | 계산서 | 계약서 | 기타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|
| 코드   | 01    | 02          | 03    | 04  | 05  | 10 |

2.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란: 기타부대비용은 취득 시 지출한 법무사비용, 중개수수료 등을 적습니다.
3. ② 자기가 제조·생산·건설한 자산란: 원재료비, 노무비, 하역비, 보험료, 수수료, 공과금(취득세·등록세를 포함합니다), 설치비, 기타부대비용을 합하여 적습니다.
4. ③ 가산항목란: 취득 시 쟁송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·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.
5. ④ 감가항목란: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.
6. ⑥ 자본적 지출액란
- 가. 개발부담금, 재건축부담금: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부담금 또는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하며,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금액을 적습니다.
- 나. 자산가치 증가 등 수선비: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적습니다.
7. ⑦ 취득 후 쟁송비용란: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든 소송비용·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.
8. ⑧ 기타비용란
- 가. 수익자부담금: 「하천법」·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,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을 적습니다.
- 나. 토지 장애 철거비: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 철거비용을 적습니다.
- 다. 도로시설비 등: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을 적습니다.
9. ⑩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 지출비용란: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작성비용, 공증비용, 인지대,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적습니다.
10. ⑪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등 기타경비란: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79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(증권회사 및 은행)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적습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79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(증권회사 및 은행)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날에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79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(증권회사 및 은행)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합니다.

유의 사항

1. 해당 항목의 금액을 적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(예시: 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
2. ⑤란 계의 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(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)의 ⑩ 취득가액란에 옮겨 적습니다.
3. 이 서식의 ⑬ 기타 필요경비 계란의 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(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)의 ⑫ 기타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.
4. 해당 항목의 지출증빙이 다수인 경우에는 「사업자등록번호」란에 "별지 작성"으로 적고 「지급금액」란에 "합계액"을 적은 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(2)에 상세 명세를 작성합니다.

##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(2)

| 일련<br>번호 | 구분<br>코드 | 구 분 | 거래상대방 |         | 지급<br>일 | 지급금액 | 증빙종류<br>(코드)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상호    | 사업자등록번호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1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2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3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4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5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6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7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8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9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10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11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12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13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14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15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16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17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18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19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20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21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22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23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24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25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26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27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28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29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30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
## 작성 방법

1. 구분 코드

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(1)의 구분코드를 이용하여 적습니다.

2. 증빙종류(코드)

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(1)의 증빙종류(코드)를 이용하여 적습니다.

3. 해당 항목의 금액을 적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(예시: 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4.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(1)의 「사업자등록번호」란에 "별지 작성"으로 적고 「지급금액」란에 "합계액"을 적은 금액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(2)에 적은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합니다.